

공공성과물의 상업적 출판 문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광식**

I. 서론

II. 공공성과물의 의의와 활용

1. 공공성과물의 의의
2. 상업적 이용으로서의 출판

III. 공공성과물의 상업적 출판에 따른 문제점

1.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판매
2. 구매자의 오인 가능성
3. 출판물의 납본 및 보상금 청구
4. 출판계약 없이 이루어지는 상업적

출판

5. 출판 형태의 변화와 공공대출권 도입
가능성에 따른 문제

IV. 공공성과물의 상업적 출판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1. 관련 법률의 개정
2. 출판산업의 문제 인식과 개선을 위한
기관 차원의 노력

V. 결론

* 본 논문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한 「2020년 출판문화산업 연구논문 공모전」에서 장려상으로 선정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 서경대학교 부설 디자인연구소 전임연구원, 법학박사.

초 록

공공의 이익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공공기관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공공기금을 통해 만들어진 공공성과물은 공공의 자산임과 동시에 학문과 산업 발전이라는 가치에 따라 상업적 활용까지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러한 공공성과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으로서 일부 민간 출판사가 공공성과물을 그대로 출판하여 고가에 판매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출판물에 대해서는 납본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판매이득을 취하는 것 역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출판물에 대한 오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 전자책 시장의 확대에 따른 상업적 출판의 용이성, 공공대출권 도입 가능성에 따른 보상금 문제 발생 등에 대한 우려도 있다.

공공성과물은 민간 영역에서의 2차적 활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핵심 자원으로서 높은 시장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상업적 이용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과연 어떠한 개선의 노력도 없이 이루어지는 공공성과물의 출판이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바람직한 출판문화의 정착과 출판 산업의 성장을 위해 공공성과물을 상업적으로 출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그 외에 검토가 요구되는 문제들에 대해 살펴보고, 개선방안으로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및 저작권법, 도서관법, 국회도서관법의 개정안과 함께 관련 기관에 의한 제재·협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공공성과물, 공공저작물, 공공데이터, 공공도서관, 상업적 출판, 납본보상금, 공공대출권

I. 서론

현재 국가와 지자체, 국책연구기관 등을 포함한 공공기관이 직접 만들어 낸 성과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 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고, 공공기금이 투입되어 만들어진 연구성과물 역시 오픈 액세스(Open Access) 또는 오픈 라이선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공공의 이익이라는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공공성과물은 공공의 자산이자 학문과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으로 이용될수록 그 가치와 유용성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공공성과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상업적 출판이라는 형태는 다소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 어떠한 변형이나 개작도 없이 원문 그대로 출판하면서 고가에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무료로 공개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구매자는 비용을 다시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POD(Publish On Demand), 1인 출판, 셀프퍼블리싱 등의 등장으로 책을 만들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출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을 뿐만 아니라,¹⁾ 서점이 아닌 타 업종 업체가 업태에 서점업을 추가해 도서관품시장에 참여하는 유행서점까지 등장한 상황에서 이러한 상업적 출판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하게 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²⁾

공공성과물의 상업적 출판은 세금을 들여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구매자가 비용을 다시 지불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그 비용이 부당한 수준의 고가라는 점 외에도 출판물 납본에 따른 보상금 부담·과다청구, 구매자의 오인 가능성 등 다양한 문제들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러한 문제들에 관한 연구는 진행된 바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성과

1) 김영아·강현주, “디자이너의 스물 퍼블리싱이 문화 소비 패턴에 미치는 영향”, 『Archives of Design Research』, 제23권 제4호(2010), 107면.

2)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교육청 등 공공기관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우선 활용 권고 - 코로나19 여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서점의 수익 개선 기대”,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20. 3. 16자.

물의 상업적 출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출판문화의 정착과 공공성과물의 활용가치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공공성과물의 의의와 활용

1. 공공성과물의 의의

(1) 공공성과물의 개념 및 범위

공공성과물이란 국가와 지자체, 국책연구기관 등을 포함하는 공공기관에 의해 직접 만들어지거나 그 외에 공공기금이 투입되어 만들어진 연구보고서와 각종 자료 등의 성과물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른 공공저작물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에 따른 공공데이터가 대표적인 공공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저작물은 공공기관 등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하거나 계약에 따라 저작권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저작물³⁾ 국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⁴⁾ 공공데이터 역시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업무상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⁵⁾ 영리적 이용을 포함한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다.⁶⁾

저작물과 데이터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과물의 형태는 특정 형태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 그 형태가 다양할 수 있고, 공공기

3)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제3조.

4)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5)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6)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투입되어 만들어진 것이라면 해당 성과물을 만든 주체가 공공기관이 아닌 학교나 연구소, 민간단체라 할지라도 공공성과물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공공기록물, 지식정보자원과 같은 법률상의 개념들도 공공성과물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으며,⁷⁾ 학술대회 및 세미나 등의 회의자료, 연구논문 등 일반인의 접근은 어렵지만, 최신성이 높고 학술적으로 큰 가치를 가진 회색문헌 역시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을 근거로 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공성과물의 범주에 일부 포함될 수 있다.⁸⁾

다시 말해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과 같이 공익성을 가진 주체로부터 만들어지거나 그러한 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성과물, 그 외에 학교나 기타 단체들에 의해 성과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세금이 쓰였다면 이러한 것들은 계획 당시부터 공공의 이익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공공성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2) 공공성과물에 대한 접근과 이용

앞서 설명한 공공성과물은 종류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접근할 수 있는 경로 역시 다양한데, 우선 공공기관에서 만들어진 성과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청구를 통해 접근이 보장된다.⁹⁾ 다만 정보공개법에 따른 접근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차원에 그치기 때문에, 저작권법 제24조의2와 공공데이터법에 해당하는 공공저작물 또는 공공데이터일 경우에 상업적 활용까지 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은 단서를 두어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유이용

7)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는 ‘공공기록물’, 개정 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제7호는 ‘지식정보자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8)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회색문헌 출판현황 조사 및 수집방안에 관한 연구”, 국립중앙도서관, 2013, 65면.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이 불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공데이터법 제17조 제1항도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나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용역을 통해 성과물을 만들어 내는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성과물의 지식재산권 귀속은 원칙적으로 공동소유하는 것으로 되어 공동소유권자의 이용허락이 요구된다.¹⁰⁾

용역계약을 통해 만들어 내는 경우 이외에 학교나 연구소 등에서 만들어진 성과물이라 하더라도 공공기금이 투입되었거나 국가기관과 공동으로 작업하여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역시 성과물에 대한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됨에 따라 제3자의 이용은 제한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공공기금 연구성과물은 오픈 액세스¹¹⁾ 정책에 따라 접근이 가능한데, 미국과 캐나다, 영국 및 유럽국가들 역시 공공기금으로 수행된 연구결과물은 일반인 모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재로 간주하여 오픈 액세스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¹²⁾ 특히 CCL(Creative Commons License)과 같은 오픈 라이선스를 통해 상업적 이용까지도 가능하게 된다.¹³⁾

결국, 공공성과물의 접근과 이용이라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출판이 이루

10)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5조의1 제1항에서는 계약에 따른 지식재산권은 공동 소유하도록 규정하면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타 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용역을 통해 저작물을 창작할 경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공동소유자의 이용허락 동의를 구하지 않는 한 제3자의 성과물 이용은 어렵게 된다.

11) 오픈액세스(Open Access)란 이용자가 학술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접근할 수 있고, 합법적으로 자유롭게 다운로드, 복제, 보급, 인쇄, 검색, 링크 등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재정적, 법률적, 기술적 장벽을 없앤 학술정보 유통 모형이다.

12) 신은자, “디지털 시대 오픈 데이터 정책의 현황과 과제”, 『정보관리학회지』, 제32권 제3호(2015), 58면.

13) CCL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이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미리 허락하는 라이선스로, CCL이 적용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저작자에게 별도로 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저작자가 표시한 이용허락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KJCI(Korea Journal Copyright Information)에 따르면 현재 2,150개의 학술지 중 6.2%인 134개의 학술지가 CCL의 6가지 이용조건 중 저작자표시(CC BY)를 적용하고 있다.

어지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른 자유이용이나 공공데이터법에 따른 활용, 오픈 라이선스를 통한 상업적 이용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에 해당할 경우 별도의 이용허락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

2. 상업적 이용으로서의 출판

(1) 공공성과물 출판의 유형

공공성과물의 출판은 ① 해당 성과물의 산출기관이 발행하는 자체 출판과 ② 출판사를 통해 출판되는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산출기관의 자체 출판은 인쇄 및 제본 등의 발행작업을 수행업체에 위임하는 것으로 자체 출판의 목적은 판매나 무료 배포, 교육이나 연구 등에 해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출판물의 판매 수익을 기관 운영비로 쓰는 경우나 사업자를 대상으로 만든 교육·홍보 자료를 무료 배포하는 경우, 국·공립대학에서 연구보고서를 만들어 내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출판사를 통해 공공성과물이 출판되는 경우는 다시 저작자인 산출기관과 출판사 간의 계약을 통해 출판하는 경우와 별도의 계약 없이 출판사에 의해 출판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계약을 통한 출판의 경우 연구자의 논문이나 저서 출판이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별도의 계약 없이 출판사에 의해 출판되는 경우 저작권법 24조의2 또는 공공데이터법 제3조와 같은 자유이용 규정에 근거하여 출판사가 별도의 이용허락이나 계약 과정을 거치지 않고 출판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2) 상업적 출판에 대한 수요

저작권법 제24조의2와 공공데이터법의 시행 이후 공공성과물의 상업적 출판을 위한 민간 출판사의 수요는 꾸준히 존재하였는데, 이러한 출판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만 2015년 이후 20건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상업적 출판의 수요뿐만 아니라 실제 출판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¹⁴⁾ 특히 이러한 분쟁 과정에서 공공성과물이 출판되지 못하는 이유는 해

당 성과물에 포함된 저작물 일부분에 대한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용허락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것인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공공성과 물의 경우 더욱 쉽게 출판될 수밖에 없으며 실제 출판된 공공성과물이 더욱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2012년 이후부터 온라인 교보문고, 예스24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공공성과물의 사례도 확인할 수 있는데,¹⁴⁾ 문제는 이렇게 민간 출판사에 의해 출판된 공공성과물이 어떠한 변형이나 개작 없이 원문 그대로 출판되면서 고가에 판매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품질로 출판하면서 출판물에 대한 민원이 출판사가 아닌 해당 성과물을 창작한 기관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¹⁶⁾ 이러한 문제는 공공성과물의 창작자 및 창작 기관의 성과 공개·공유를 소극적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결국 공공성과물 활용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공공성과물은 민간 영역에서의 활용이 시장성(marketable)을 가장 높일 수 있고,¹⁷⁾ 재가공된 것이야말로 원본보다 더 가치 있는 핵심 자원이 될 수 있으며,¹⁸⁾ 개방과 활용의 순환 과정을 통해 정부가 사업자나 이용자로부터 배우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¹⁹⁾ 그러나 과연 이러한 상업적 출판

14)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사건번호 2019-021】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발간물 데이터 사건, 【사건번호 2019-015 내지 020】 국립산림과학원 발간물 데이터 사건, 【사건번호 2019-0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간물 데이터 사건 등의 모든 쟁점은 모두 상업적 출판을 위한 공공데이터 제공요청과 제3자의 저작권 포함에 따른 제공거부이다.

15) 온라인 서점을 통해 확인한 결과 국립국어원의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해설」,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 매뉴얼(2018)」,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SOP)」,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집단급식소 해협(HACCP) 관리」 등 수백 권 이상의 공공성과물이 최근까지도 민간 출판사를 통해 계속 출판되고 있다.

16) 한국문화정보원, “공공저작물(어문저작물) 민간 출판 이슈 검토 회의자료”, 한국문화정보원, 2017.

17) Sieber, Renee E. & Johnson, Peter A., “Civic open data at a crossroads: Dominant models and current challenges”, *Government Information Quarterly*, Vol.32 No.3 (2015), p. 313.

18) Pollock, Rufus, “Building the (Open) data ecosystem”, Open Knowledge Foundation, <<https://blog.okfn.org/2011/03/31/building-the-open-data-ecosystem/>>, 검색일: 2020. 6. 29.

이 공공성과물의 활용가치를 입증하는 형태를 보여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따라서 공공성과물의 상업적 출판을 단순히 2차적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경제적 측면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함께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지할 필요가 있다.

Ⅲ. 공공성과물의 상업적 출판에 따른 문제점

1.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판매

공공도서관은 공중의 정보이용이나 교육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도서관으로서²⁰⁾ 사회 및 매체 환경의 변화, 이용자들의 요구 변화, 제도적 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경제·문화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데,²¹⁾ 무엇보다도 기관 구매자로서 주요 신간을 구매해 줄 수 있는 공공시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²²⁾ 따라서 이런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민간 출판사의 판매이득은 일반 출판물과는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 공공도서관의 도서 구매는 공중의 정보이용과 교육 등 공공의 이익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공공성과물이 다른 출판물에 비해 우선 구매대상으로 고려될 여지가 클 수밖에 없다.

문제는 2019년 기준 전국의 공공도서관이 약 1,131개관이 있으며,²³⁾ 공공

19) Janssen, Marijn et al., “Benefits, Adoption Barriers and Myths of Open Data and Open Government”, *Information Systems Management*, Vol.29 No.4(2012), pp. 258-268.

20) 도서관법 제2조.

21) 이학준·이용관, “공공도서관 공급의 효과성 분석: 이용자 수와 도서 대출권수 변화를 중심으로”, 『예산정책연구』, 제8권 제2호(2019), 227면.

22) 한국법제연구원, “출판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7, 115면.

23)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0년도(19년 실적) 공공 도서관 통계 지표 및 주요 질의응답”, 문화체육관광부, 2020, 1면.

성과물이 출판될 때마다 1부씩 장서로 구매해 줄 경우 1천 부 이상의 판매량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미 공개된 공공성과물을 공공도서관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 또한 무료 이용이 가능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금을 들여 구매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기존의 공공성과물을 출판하는 과정에서 내용상의 변형이나 개선을 통해 그 가치가 새롭게 인정될 정도라면, 공공도서관 판매를 통한 이득은 민간 출판사의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볼 여지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 없이 출판된 공공성과물의 구매는 공공도서관 보유 도서의 중복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초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사실상의 재판(再版)인 출판물과 다를 바 없고, 원문의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한다면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에서는 이러한 출판물을 구매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판매는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과 달리 볼 이유가 없을 것이다.

2. 구매자의 오인 가능성

일반적으로 공공성과물은 저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업적 활용의 형태에 상관없이 저작권법에 따른 출처표시의 의무가 발생하고, 출판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현재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출처표시는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출처표시 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²⁴⁾ 공공성과물을 원본 그대로 출판하는 경우 이러한 저작권법상의 출처표시는 대부분 표지에 저자를 명기하는 것으로 대체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표시된 출처가 구매자의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민간 출판사가 공공성과물을 출판하는 경우, 별도의 이용허락이나 출판계약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공성과물의 창작자는 출판 사실조차 알

24) 저작권법 제37조.

수 없고 출판 과정에 관여할 수 없게 된다. 그러한 점 때문에 출판물에 대한 창작자의 의견 반영이나 검수가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출판물에 대해 발생하는 민원이나 평가는 모두 창작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출판물에 표시된 저자가 국책연구기관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구매자는 구매 단계에서 해당 기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구매를 결정하게 될 것인데, 해당 출판물의 원문이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는 사실을 구매 후 알게 되어 해당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다. 혹은 출판사가 공공성과물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였으나 내용상의 문제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로서, 가령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다른 내용과 조합하여 원래의 연구목적 및 효과와는 다른 방향으로 이용함으로써 구매자에게 원 성과물의 작성 취지와는 다른 오인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출처표시는 저작자가 누구인지를 밝힘으로써 창작의 기여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작자에게 돌리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²⁵⁾ 상업적 출판에 따른 출처표시가 오히려 앞서 설명한 오인을 불러일으킬 정도라면 저작권법상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며, 특히 원문의 창작 목적에 반하는 내용상의 변경이라면 침해 가능성은 더욱 높다.²⁶⁾ 다만 출판에 활용된 공공성과물이 저작물성 없는 단순 수치 자료와 같은 데이터라면 이러한 수정·변경·조합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출판 후 저작권법상의 2차적저작물이나 편집저작물로 인정받게 되는 가능성도 존재한다.²⁷⁾ 또한 출판사의 저작인격권 침해에 따른 구제가

25) 하동철, “출처표시의 적정성과 저작권법 위반의 범위 - 입시학원의 해법 소개 사건,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2202”, 『계간 저작권』, 2011 봄호(2011), 113면.

26)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제21조 역시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저작물을 변경할 경우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 또는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7) 저작권법 제5조는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로서 보호하고 있으며, 제6조는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편집저작물 역시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하고 있다.

가능하더라도 이는 저자에 대한 구제일 뿐 선의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구매자에 대한 구제가 아니라는 문제가 남게 된다.

3. 출판물의 납본 및 보상금 청구

납본은 출판자가 출판물의 사본을 국가도서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로서 납본의 원칙은 국제 조약 및 많은 나라에서 도서관 법률로 제정되어 있는데,²⁸⁾ 우리나라 역시 현재 도서관법 제20조 및 국회도서관법 제7조에 따라 국내에서 제작된 도서 등의 도서관 자료에 대해서는 납본의무가 발생하며, 판매용 자료의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공공성과물을 그대로 출판하는 출판물이라 하더라도 납본의무와 함께 보상금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서 출판물의 납본 및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부여의 중복과 더불어 납본 보상금의 청구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로 도서자료의 납본의무는 개인이나 학교, 공공기관 등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에게 발생하기 때문에, 공공성과물을 그대로 출판할 경우 동일 내용의 출판물이 납본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ISBN이 새로 부여된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2013년 수립한 정부간행물 납본 지침에 공공저작물 개방정책에 따른 정부간행물의 인쇄자료 및 디지털파일의 납본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는 점에서도 민간 출판사의 상업적 출판물이 초래하는 중복 가능성은 명확하다.²⁹⁾ 두 번째로 납본한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일 경우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정부간행물로서 이미 납본되었거나 공개되어 있는 공공성과물임에도 불구하고 납본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세 번째로는 이러한 보상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공공성과물의 가치를 고려한 고액의 보상금 신청 가능성의 문제이다.

실제로 이와 유사한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도서 한 권을 출판한 뒤

28) 이석형 외 3인, “디지털자료 납본 보상금관리시스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0권 제1호(2009), 235면.

29)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연보 2014”, 국립중앙도서관, 2015, 44-45면.

다음 해에 내용은 거의 그대로 두고 신문기사만 조금 덧붙이고 제목만 바꾼 뒤에 ISBN을 새로 부여해 새로운 도서로 납본하는 사례가 있었다.³⁰⁾ 그리고 2013년 한 출판사는 국회도서관에 도서 2권을 납본하면서 책의 정가가 1,000조 원이라는 이유를 들어 납본 보상금으로 1,000조 원을 요구하였고, 2014년에는 4권의 책을 발행한 후 각 2권씩 총 8권을 납본하면서 납본 보상금으로 2,000조 2억 원을 청구한 바 있다.³¹⁾ 일반적으로 납본의 주체가 되는 출판사들은 납본절차가 불편하고 실질적으로 출판사에 이득이 되지 않아 납본을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가 많지만,³²⁾ 실제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에서 납본 보상금에 대한 적정성 심의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³³⁾

위 사례들과 같이 도서의 납본과 정당한 보상에 대한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사례가 이전부터 발생함에 따라 정당한 보상 기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³⁴⁾ 참고로 미국은 총 2부의 납본에 대해 원칙적으로 무보상주의를 채택하고 있다.³⁵⁾ 영국 역시 총 6부를 자기 비용으로 납본해야 하지만 무보상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총 2부를 무상으로 납본하고 무상납본이 부당할 정도로 부담이 큰 경우에 한 해 복제물 생산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³⁶⁾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본다면 공공성과물의 출판물 납본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본도서의 중복 및 ISBN의 중복은 납본 과정에 드는 시간적, 경제적 낭

30) 고나무, 「책 두 권 값 1000조원을 지불하시오」, 한겨레, 2014. 9. 20자.

31) 박영석, 「책 2권 받고 1조원 내라?」, 조선일보, 2008. 7. 4자.

32) 오선영·정연경, “출판사의 납본 인식을 통한 납본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3권 제4호(2012), 142면.

33)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연보 2013”, 국립중앙도서관, 2014;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연보 2014”, 국립중앙도서관, 2015.

34) 김나영·오일석, “도서의 납본과 보상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50권 제3호(2016), 514면.

35) 박조원 외 3인, “간행물 납본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0조에 따른 간행물 제출 관련”,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19면.

36)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국가문헌 망라적 수집을 위한 출판물 발간현황 분석과 납본·수집 개선방안 연구”, 국립중앙도서관, 2012, 111면.

비일 뿐만 아니라, 납본 보상금의 문제는 과다 청구된 금액만이 아닌 동일 출판물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 그리고 도서관 자료심의위원회에서 납본 보상금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수많은 납본도서의 내용 중복을 알아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납본의 중복을 막고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4. 출판계약 없이 이루어지는 상업적 출판

출판계약은 크게 출판허락계약과 출판권설정계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출판권설정계약은 출판권자가 저작권자로부터 복제 및 배포권을 취득하고 설정계약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발행하는 내용의 출판권을 설정하는 계약으로 출판권자에게 배타적·독점적 권리를 부여하게 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출판사들은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하는 것인데,³⁷⁾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공공성과물의 경우 출판계약 없이 출판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반복적인 출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존재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출판은 같은 출판사에 의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동일 공공성과물에 대해 다수의 출판사가 출판하는 형태로 발생할 수도 있게 된다.

참고로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제10조는 공공저작물의 경우 제3자의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취지의 출판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은 공공저작물의 출판이 공중의 접근성과 공공저작물의 활용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이며, 출판 및 발행의 주체자를 ‘공공기관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공공저작물의 출판은 상업적 목적성을 가지지 않고 공공기관 등에 의한 자체 출판 및 발행을 권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³⁸⁾ 이러한 점으

37) 이영대·김규란, “전자책과 디지털도서관, 그리고 현행법의 상생 가능성”, 『정보화정책』, 제18권 제4호(2011), 87면.

38)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제10조(공공저작물의 출판 및 발행) 공공기관 등

로 미루어볼 때 대부분의 공공성과물이 정보공개법과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데이터법 등을 통해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공공성과물의 출판을 공중의 접근성 향상이라는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은 상업적 출판 문제를 키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5. 출판형태의 변화와 공공대출권 도입 가능성에 따른 문제

출판은 투입비용 대비 수익이 매우 큰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콘텐츠산업 가치사슬의 원점에 있는 창의력의 원천이라는 점에서 그 파급력과 중요성을 가늠할 수 있는 분야이다.³⁹⁾ 특히 2012년 발표된 「출판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의 5대 정책과제 중 하나인 ‘우수 출판콘텐츠 제작 활성화’가 ‘양질의 전자책 콘텐츠 확보’를 하나의 세부과제로 담고 있다는 점에서도 우수한 콘텐츠의 출판은 출판문화의 성장과 질서 확립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성과물이 과연 출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우수 콘텐츠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고, 출판 형태의 변화 속에서 높아지는 공공성과물의 상업적 출판에 대한 수요 역시 우려된다.

최근 전자책의 다양한 장점과 단말기의 보급 확대 등은 전자책 시장의 활성화를 가져오게 되었고,⁴⁰⁾ 한국의 전자책 출판시장은 2020년까지 연평균 10.4%의 성장률을 보이며 16억 2,2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⁴¹⁾ 그리고 이제는 오디오북에 대한 수요 역시 상당한데,⁴²⁾ 특히 AI 스피

은 공공저작물의 출판 및 발행 등을 통해 공공저작물에 대한 이용자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다만, 자유이용에 제공하는 공공저작물인 경우 제3자의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취지의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9) ㈜유플러스연구소, “창조경제 시대 문화융성 위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방안 : 출판산업 5개년 계획의 창조적 실행전략”, 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3, 35면.

40) ㈜솔투로, “전자책의 인증정보를 이용한 저작권 유통 시스템”, 『저작권기술 Newsletter』, 제13권 제3호(2017), 1면.

41) 유계환, “모바일 전자책의 이용특성과 서비스품질이 지각가치, 고객만족 및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동명대학교, 석사, 2019, 8면.

42) 문화체육관광부, 「독서생활에 종이책 비중 줄고 전자책 늘어 - 2019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결과 발표」,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20. 3. 11자.

커처럼 생활 속 보이스 콘텐츠의 사용과 다른 일을 하면서도 책에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오디오북 시장의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⁴³⁾ 이러한 출판산업의 변화 속에서 아직까지 공공성과물을 오디오북으로 제작한 사례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공공데이터 분쟁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 전자책의 경우 이미 공공성과물을 상업적으로 출판하기 위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기에 점점 다양한 출판 형태로 상업적 출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초기 전자책 서비스의 형태와 달리 이제는 전자책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포맷인 ePub(electronic publication)으로 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공공성과물이 디지털 형태의 파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당연히 전자책 제작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적고,⁴⁴⁾ 콘텐츠 개발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역시 거의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출판사의 입장에서는 공공성과물을 전자책으로 제작하는 것이 당연히 큰 이득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직 전자책을 발행하지 않는 출판사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신간의 전자책 비중이 낮은 것인데,⁴⁵⁾ 향후 전자책 시장에 뛰어드는 출판사가 늘어나는 환경에서는 다수의 출판사에 의해 수많은 동일 출판물이 계속 만들어지거나, 이미 공공성과물 출판의 용이성을 알고 있는 출판사에 의해 사실상 독점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물론 이러한 문제는 전자책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로 이루어지는 출판에도 적용될 수 있는 문제일 것이다.

다음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은 공공대출권의 도입 가능성에 따른 보상금 문제인데, 공공대출권(Public Lending Right)이란 공중을 대상으로 무료로 서비스하는 공공도서관의 대출로 인하여 저작물의 판매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저작자가 재산적 손실을 보전하는 의미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권리이다.⁴⁶⁾ 그리고 2017-2018년 들어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공공

43) 우세웅, “오디오북 국내 사례와 출판시장의 인식 연구”,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석사, 2019, 10면.

44) 김소라·김동언, “절판(絶版)서적의 전자책 제작방법에 따른 효용성 비교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4호(2017), 162-164면.

45) 유계환, 위의 글, 8면.

46) 정현태, “공공대출권 보상제도의 운영현황과 대응방안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

대출권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⁴⁷⁾ 현재까지 공공대출권의 도입 결정 여부는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공공대출권 제도를 도입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의 경우와 같이 보상 대상자의 범위에 출판사까지 포함되는 경우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⁴⁸⁾

향후 우리나라의 공공대출권 도입을 전제로 하였을 때, 출판사가 보상 대상자의 지위를 얻게 된다면 공공성과물을 출판한 출판물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갖게 되고, 결국 앞서 언급한 납본 보상금 청구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납본 보상금의 청구가 납본 시 1회에 그치는 것과 달리 공공대출에 대한 보상금은 계속 지급되고, 보상금액 역시 납본 보상금보다 더욱 클 것이라는 점에서 공공대출권의 도입도 공공성과물의 상업적 출판 문제와 연결지어 검토할 필요가 있다.

IV. 공공성과물의 상업적 출판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1. 관련 법률의 개정

(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3조 및 제28조

우선 출판법은 출판문화산업의 지원·육성과 간행물의 심의 및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함에 따라 제23조에 간행물의 유통질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27조의3과 제28조에 벌칙과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공공성과물의 상업적 출판을 제재하는 방안으로 아래 <표 1>과 같은 개정안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출판사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은 정부간행물 및 공공기금 연구성과물 등 국가에 의

33권 제4호(2002), 21-22면.

47) 이홍용, “공공대출보상권 제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 2019, 71면.

48)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공공대출권 도입 필요성에 대한 기초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8, 71면.

해 관리되는 자료인 공공성과물을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그대로 발행할 수 없으며, 이러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제28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다.

〈표 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3조 및 제28조 개정안

현행	개정안
<p>제23조(간행물의 유통질서) ① 간행물의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간행물의 저자, 출판 및 유통에 관련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간행물의 저자 또는 출판사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간행물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그 간행물의 저자 또는 그 출판사와 관련된 자에게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 2. 서점 등 소매상이 간행물의 저자 또는 출판사의 대표자 등이 제1호의 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간행물의 판매량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행위 3. 그 밖에 간행물의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p>제23조(간행물의 유통질서) ① 간행물의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간행물의 저자, 출판 및 유통에 관련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간행물의 저자 또는 출판사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간행물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그 간행물의 저자 또는 그 출판사와 관련된 자에게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 2. 서점 등 소매상이 간행물의 저자 또는 출판사의 대표자 등이 제1호의 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간행물의 판매량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행위 3. 출판사의 대표자 등이 정부간행물 및 공공기금 연구성과물 등 국가에 의해 관리되는 자료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그대로 발행하는 행위 4. 그 밖에 간행물의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p>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6. 제23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유통과 관련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p>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6. 제23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유통과 관련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참고로 출판법 제27조의3은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저작권법 제24조의2와 공공데이터법, 오픈 라이선스를 통해 상업적 이용이 보장되고 형법 제24조가 피해자의 승낙을 위법성 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벌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다소 지나친 제재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정안에 명시된 ‘그대로 발행하는 행위’는 원본을 복제하

는 수준에 그치는 정도로서 부당이득의 목적이 있는 것이라 보아야 하며, 다수의 공공성과물을 수집·선정·배열·조합하여 새로운 정보 제공의 가치를 지닌 편집저작물을 만들어 내는 경우라면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공공성과물을 어떠한 변경이나 개선도 없이 그대로 출판하여 이득을 취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매자의 오인과 무분별한 출판 가능성의 문제 등을 고려한다면, 출판 산업의 질서를 보호법익으로 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로서 제28조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절한 것이라 본다. 나아가 현행 과태료 규정이 현실적인 제재를 가하지 못해 출판사들이 납본의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제재와 출판사의 인식이 뒷받침되는 것 역시 중요할 것이다.⁴⁹⁾

(2) 도서관법 제20조, 제20조의2 및 국회도서관법 제7조

1) 도서관자료의 납본 규정

납본제도는 국가에서 출판되는 자료들의 수집과 보존을 위한 기초적인 수단이며, 저작권의 보호와 함께 지식문화의 보존과 계승이라는 점 등에 있어 중요하다.⁵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출판물에 대해 무분별한 납본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납본제도의 목적과 중요성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공공성과물의 상업적 출판을 납본 및 보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이 출판법을 개정한다 하더라도 민간 출판사에 의한 공공성과물의 출판이 비상업적 목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상업적인 목적으로 출판된다 하더라도 그대로 이용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출판물에 대한 납본의 중복과 보상금 청구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도서관법 제20조 제4항 및 국회도서관법 제7조 제3항에 단서를 두어 납본한 도서관 자료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이 이미 공표되거나 납본한 자료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납본 및 보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49) 오선영·정연경, 위의 글, 147면.

50) 윤희윤, “한국의 납본제도 개선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7권 제4호(2003), 26면.

방안이 아래 <표 2>와 같이 고려될 수 있다.⁵¹⁾

<표 2> 도서관법 제20조 및 국회도서관법 제7조 개정안

현행	개정안
<p>도서관법 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④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한 자에게 지체 없이 납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본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p>	<p>도서관법 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④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한 자에게 지체 없이 납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본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단, 납본한 도서관 자료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이 이미 공표되거나 납본한 자료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납본 및 보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p>
<p>국회도서관법 제7조(도서관자료의 납본 등) ③ 공공기관등이 아닌 자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는 제외한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 2부를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서관은 납본한 자에게 그 자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p>	<p>국회도서관법 제7조(도서관자료의 납본 등) ③ 공공기관등이 아닌 자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는 제외한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 2부를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서관은 납본한 자에게 그 자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단, 납본한 도서관 자료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이 이미 공표되거나 납본한 자료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납본 및 보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p>

이 개정안은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이 비매품이나 무가(無價)자료에 대해서는 ‘정당한 가격’이 없으므로 납본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 더하여,⁵²⁾ 민간 출판사에 의해 출판된 공공성과물에 대하여도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물론 공공성과물을 상업적 출판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출판사의 일정한 노력과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실비 변상적 보상금 지급은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미 만

51) 납본 보상금의 산정 기준을 ‘실비 변상’에 준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나 본 연구의 주제가 공공성과물의 상업적 출판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제시하고 있다.

52) 박승진 외 3인, “디지털자료 납본에 대한 보상 체계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 39권 제2호(2008), 4면.

들어진 공공성과물의 전부 혹은 상당 부분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은 콘텐츠 개발 비용의 절감일 뿐만 아니라 공공성과물의 경제적 가치에 편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납본대상에서도 제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함에 따라 출판업자의 보상금 청구권과의 상충 가능성을 배제하고, 도서관이 납본을 받지 않음으로써 출판사 역시 도서 납본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해를 입지 않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⁵³⁾

2) 온라인 자료의 수집 규정

인쇄자료를 기반으로 한 전통적인 납본제도에서 디지털 자료의 생산과 이용이 증가하면서 디지털 자료의 납본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었고,⁵⁴⁾ 현재는 도서관법 제20조의2가 국립중앙도서관이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선정하여 수집·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⁵⁵⁾ 그런데 문제는 도서관법 제20조의2 제5항이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일 경우에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서관 자료의 납본 중복 및 보상금 지급과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도서관법 제20조의2가 온라인 자료에 한하여 적용된다 할지라도 이제 대부분의 공공성과물은 만들어질 당시부터 디지털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상업적 출판은 종이 서적뿐만 아니라 전자책 형태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 자료의 수집 규정 역시 아래 <표 3>과 같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53) 서울행정법원 2014. 6. 13. 선고 2014구합4474, 서울고등법원 2014. 2. 3. 선고 2014누54945.

54)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국립중앙도서관, 2012, 3면.

55) OASIS(Online Archiving & Searchig Internet Sources)를 통해 디지털 자료의 수집·보존이 이루어지고 있다. (www.oasis.go.kr)

〈표 3〉 도서관법 제20조의2 개정안

현행	개정안
<p>제20조의2(온라인 자료의 수집)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대한민국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자료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선정하여 수집·보존하여야 한다.</p>	<p>제20조의2(온라인 자료의 수집)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대한민국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자료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선정하여 수집·보존하여야 한다. 단, 이미 수집된 자료가거나 수집된 자료와 상당 부분 유사한 자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위와 같은 개정을 통해 온라인 자료의 경우 역시 이미 수집된 공공성과물이거나 상당 부분이 유사하여 동일한 수준으로 판단되는 자료는 수집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고, 자료수집의 예외는 제20조의2 제5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에서도 제외하는 결과가 되어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게 된다.

3) 저작권법 제37조

상업적으로 출판되는 대다수의 공공성과물은 저작권법상의 공공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저작권법 개정을 통한 제재 역시 가능한데, 그렇다면 저작권법 제37조와 제24조의2의 개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저작권법 제37조 개정을 통해서도 상업적 출판물에 대한 출처표시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구매자 역시 해당 출판물의 원본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시키고, 무료 이용과 출판물 구매 사이에서 직접 선택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공공저작물의 상업적 출판을 저작권법 제24조의2의 ‘자유이용’의 범위에서 배제함으로써 출판계약을 맺도록 하는 것인데, 출판실정계약의 경우 특정 출판사의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제10조에 반하는 것이 되고, 출판허락계약의 경우에는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어느 출판사나 출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출판계약의 의미가 없게 된다는 문제가 남는다.

따라서 저작권 제37조의 개정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

다. 참고로 미국 저작권법 제403조는 미국 정부저작물(U.S. Government works)이 대부분을 이루는 출판물에 대해서는 저작권 표시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⁵⁶⁾ 오히려 1989년 이전에는 그러한 사항을 명확하게 표시(예를 들어, © 2001 Jane Brown. Copyright claimed in Chapters 7-10, exclusive of U.S. government maps.)하도록 했는데,⁵⁷⁾ 그 이유는 정부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출판하는 경우 도화 삽입이나 편집 등의 추가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당연한 관행이었기 때문이다.⁵⁸⁾ 그리고 현재 미국 정부저작물에 대해 저작권 표시를 하지 않도록 하는 이유는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한국의 공공저작물과 달리 미국 정부저작물은 저작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⁵⁹⁾

이러한 점에서 공공저작물에 대한 출처표시는 미국 정부저작물과 달리 의무적일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상업적 출판에 대해서는 무료 이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임을 표시하는 더욱 명확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표 4>의 저작권법 제37조 개정안은 공공성과물의 상업적 출판물에 대해 미국 정부저작물의 상업적 출판물에 대한 이전 저작권 표시와 유사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자유이용이 가능한 저작물임을 명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표 4> 저작권법 제37조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저작권법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6) 17 U.S. Code §403.

57) Infoplease, "Publications Incorporating United States Government Works", Infoplease, <<https://www.infoplease.com/business-finance/notice-copyright/publications-incorporating-united-states-government-works>>, 검색일: 2020. 6. 27.

58) H. Rep No. 94-1476, at 145(1976).

59) Shaw, Meredith, "Nationally Ineligible Works: Ineligible for Copyright and the Public Domain", *Columbia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Vol.44 No.3(2006), p. 1048.

<p>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p>	<p>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p> <p>③ 제24조의2에 해당하는 저작물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출판하는 자는 이용된 저작물이 자유이용 대상임을 명시하여야 한다.</p>
---	--

이러한 개정안에 따라 공공성과물을 상업적으로 출판하는 경우 일반적인 출처표시와는 달리 이용방법과 경로, 무료이용 가능성 등의 정보를 구매자에게 전달함으로써 구매비용 지불에 대한 선택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유이용 대상 저작물임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출판사의 임의적인 방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이나 정부 고시 등을 통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공되어야 하고, 여기에는 구매 전 자유이용 대상 저작물임을 인지할 수 있는 출처표시 위치가 포함되어야 한다.⁶⁰⁾

저작권법 제138조 제2호는 “제37조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벌칙규정은 제37조 개정안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자유이용 대상임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거나 출처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벌칙규정이 적용될 것이다.⁶¹⁾

60) 예를 들어, 현재 공공누리에서 안내하고 있는 출처표시 방법 중 하나는 “본 저작물은 ○○○에서 ○○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유형으로 개방한 ○○○(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고 표시하는 것이나, 구매자가 구매 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출판물의 표지 하단에 표시되는 경우를 고려할 수 있다.

61) 출판법 제28조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당이득 목적의 출판을 제한하고 출판물 구매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출처표시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규정 역시 동일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2. 출판산업의 문제 인식과 개선을 위한 기관 차원의 노력

출판산업에서 벌어지는 문제는 비단 공공성과물을 그대로 출판하는 과정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대다수의 학술지가 민간 상업출판사를 통해 출판 및 유통되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성과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논문을 보기 위해서는 구독료를 내야 하는 실정은 또 다른 상업적 출판의 부작용으로 볼 수 있으며,⁶²⁾ 수십 년간 학계와 출판업계에서 일어난 이른바 ‘표지갈이’사건 역시 비정상적인 출판 관행이었다.⁶³⁾ 결국, 민간 출판사의 공공성과물 출판은 세금의 주체인 국민이 생산에 대한 비용과 이용에 대한 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⁶⁴⁾ 아무런 제재 없이 구매자의 결정에만 책임을 떠안기는 것은 공중의 접근에 비용 장애가 발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⁶⁵⁾ 그리고 이제는 공공성과물의 상업적 출판물이 국내 출판사에 의해 직수출이나 공동제작(Co-production and Co-Edition), 전자책 등의 형태로 수출되고⁶⁶⁾ 그 과정에서 번역물에 대한 2차적 저작물성 인정과 출판사의 이익창출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까지도 고려한다면,⁶⁷⁾ 바람직한 출판문화 정착을 위한 출판산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공공성과물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보장하고 국가 차원에서 온라인 자료수집 및 납본제도를 시행하는 목적은 산업 발전과 문화유산이라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점에서 관련 기관의 문제 인식과 개선을 위한 협조가

62)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오픈엑세스(OA) 실행 우선순위는 정책개발 — 공공 연구성과물의 개방·공유·활용 체제 구축”, 『KISTI ISSUE BRIEF』, 제2호(2018), 8면.

63) 한지영, “일명 ‘표지갈이’사건에서의 부정발행죄 적용범위에 관한 고찰 — 의정부지방법원 2016. 6. 15. 선고 2015고단4745 판결을 중심으로”, 『계간 저작권』, 2016 가을호(2016), 213면.

64) 남영준 외 3인, “글로벌 오픈엑세스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 국립중앙도서관, 2016, 181면.

65) 정경희, “공공기금으로 작성된 논문의 오픈엑세스 정책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27권 제1호(2010), 213면.

66) 공경용 외 5인, “도서 완제품 수출 가이드북”,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5, 7-9면.

67) 김경순 외 5인, “도서 저작권 수출 가이드북 — 기초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3, 7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기관 차원의 개선 노력으로서는 ① 공공저작물과 공공데이터가 각각 제공되고 있는 공공누리 사이트 및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상업적 이용의 범위와 출판 가능성 안내,⁶⁸⁾ ② ISBN 발급을 위한 한국문헌번호센터 접속 시 공공성과물의 상업적 출판 해당 여부 확인, ③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에서 실시하는 ISBN 관련 교육 과정에서 ISBN 미부여 대상의 안내, ④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출판 수출 지원과정에서 공공성과물의 상업적 출판 유형에 대한 제재 기준 마련, ⑤ 납본 심의절차 과정에서 납본 예외사항으로서의 안내 방법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⁶⁹⁾

앞서 언급한 관련 법률의 개정이 공공성과물의 상업적 출판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방안이었다면, 관련 기관의 협조는 이러한 제도를 보완하고 출판업계의 바람직한 경제행위를 독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열린 정보 사회에서 출판행위에 대한 제재가 차별적으로 여겨질 수는 있지만, 이는 곧 구매자의 신뢰와 콘텐츠 개발의 활성화로 이어져 출판 산업이 더욱 성장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V. 결론

공공의 이익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공적 기관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공공기금을 통해 만들어진 이른바 공공성과물은 공공의 자산임과 동시에 학문과 산업 발전이라는 가치에 따라 법률과 오픈 액세스 등을 통해 접근이 보장되고, 대다수의 공공성과물은 상업적 활용의 범위 내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공공성과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부 비도덕적 출판행위는 하나의 부작용으로서 제도적 보완과 함께 여러 방면에서의 개선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68) 공공저작물과 공공데이터는 각각 공공누리 사이트(www.kogil.or.kr)와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제공되고 있다.

69) 오선영·정연경, 위의 글, 157면.

실제로 어떠한 개선의 노력도 없이 원문을 그대로 이용하여 발행한 출판물을 고가에 판매하고, 도서자료 및 온라인 자료로서 납본·수집 과정에서의 보상금을 청구하며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출판 관행은 더욱 확대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제도적 보완책으로서 관련 법률인 출판법과 저작권법, 도서관법 및 국회도서관법의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이러한 개정을 통해 공공성과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그대로 출판하는 것을 제한하면서 그 외 공공성과물의 출판에 대해서는 납본 및 보상금 예외대상으로서의 적용과 출처표시 기준 강화를 통해 구매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더하여 이러한 제도적 개선과 함께 관련 기관의 노력으로서 공공성과물의 상업적 출판에 대한 지원을 제재하고, 납본 및 공공성과물의 이용과정에서 안내하는 방법 등을 제안함으로써 출판업계의 자발적인 문제 인식과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공공성과물의 이용 방법에 있어 출판업계가 가져야 할 도의적 책임을 묻고, 공공성과물의 상업적 출판 문제를 법률상의 위법성 여부가 아닌 제도적 부작용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제도적 개선을 위한 자발적 노력이 여러 방면에서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된다. 아울러 더 이상의 이러한 비도덕적인 출판행위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면, 공공성과물의 활용가치 제고는 물론 올바른 출판문화의 정착과 출판산업 발전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학술지(국내)〉

- 곽승진 외 3인, “디지털자료 납본에 대한 보상 체계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9권 제2호(2008).
- 김나영·오일석, “도서의 납본과 보상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50권 제3호(2016).
- 김소라·김동인, “절판(絶版)서적의 전자책 제작방법에 따른 효용성 비교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4호(2017).
- 김앵아·강현주, “디자이너의 스몰 퍼블리싱이 문화 소비 패턴에 미치는 영향”, 『Archives of Design Research』, 제23권 제4호(2010).
- (주)솔투로, “전자책의 인증정보를 이용한 저작권 유통 시스템”, 『저작권기술 Newsletter』, 제13권 제3호(2017).
- 신은자, “디지털 시대 오픈 데이터 정책의 현황과 과제”, 『정보관리학회지』, 제32권 제3호(2015).
- 오선영·정연경, “출판사의 납본 인식을 통한 납본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3권 제4호(2012).
- 윤희윤, “한국의 납본제도 개선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7권 제4호(2003).
- 이석형 외 3인, “디지털자료 납본 보상금관리시스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0권 제1호(2009).
- 이영대·김규란, “전자책과 디지털도서관, 그리고 현행법의 상생 가능성”, 『정보화정책』, 제18권 제4호(2011).
- 이학준·이용관, “공공도서관 공급의 효과성 분석: 이용자 수와 도서 대출권수 변화를 중심으로”, 『예산정책연구』, 제8권 제2호(2019).
- 정경희, “공공기금으로 작성된 논문의 오픈액세스 정책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27권 제1호(2010).
- 정현태, “공공대출권 보상제도의 운영현황과 대응방안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3권 제4호(2002).
- 하동철, “출처표시의 적정성과 저작권법 위반의 범위 — 입시학원의 해법 소개 사건,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2202”, 『계간 저작권』, 2011 봄호(2011).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오픈액세스(OA) 실행 우선순위는 정책개발 — 공공 연구 성과물의 개방·공유·활용 체제 구축”, 『KISTI ISSUE BRIEF』, 제2호(2018).

한지영, “일명 ‘표지갈이’사건에서의 부정발행죄 적용범위에 관한 고찰 — 의정부지방법원 2016. 6. 15. 선고 2015고단4745 판결을 중심으로”, 『계간 저작권』, 2016 가을호(2016).

〈학술지(해외)〉

Janssen, Marijn et al., “Benefits, Adoption Barriers and Myths of Open Data and Open Government”, *Information Systems Management*, Vol.29 No.4(2012).

Shaw, Meredith, “Nationally Ineligible Works: Ineligible for Copyright and the Public Domain”, *Columbia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Vol.44 No.3(2006).

Sieber, Renee E. & Johnson, Peter A., “Civic open data at a crossroads: Dominant models and current challenges”, *Government Information Quarterly*, Vol.32 No.3(2015).

〈학위논문(국내)〉

우세웅, “오디오풀 국내 사례와 출판시장의 인식 연구”,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석사, 2019.

유계환, “모바일 전자책의 이용특성과 서비스품질이 지각가치, 고객만족 및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동명대학교, 석사, 2019.

이홍용, “공공대출보상권 제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 2019.

〈연구보고서〉

남영준 외 3인, “글로벌 오픈액세스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 국립중앙도서관, 2016.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국가문헌 망라적 수집을 위한 출판물 발간현황 분석과 납본·수집 개선방안 연구”, 국립중앙도서관, 2012.

박조원 외 3인, “간행물 납본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0조에 따른 간행물 제출 관련”,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회색문헌 출판현황 조사 및 수집방안에 관한 연구”, 국립중앙도서관, 2013.

(주)유플러스연구소, “창조경제 시대 문화융성 위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방안: 출판산업 5개년 계획의 창조적 실행전략”, 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3.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국립중앙도서관, 2012.

한국법제연구원, “출판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7.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공공대출권 도입 필요성에 대한 기초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8.

〈신문기사 및 보도자료〉

고나무, 「책 두 권 값 1000조원을 지불하십시오」, 한겨레, 2014. 9. 20자.

박영석, 「책 2권 받고 1조원 내라?」, 조선일보, 2008. 7. 4자.

문화체육관광부, 「독서생활에 종이책 비중 줄고 전자책 늘어 — 2019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결과 발표」,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20. 3. 11자.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교육청 등 공공기관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우선 활용 권고 — 코로나19 여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서점의 수익 개선 기대」,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20. 3. 16자.

〈기타 자료〉

공경용 외 5인, “도서 완제품 수출 가이드북”,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5.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연보 2013”, 국립중앙도서관, 2014.

_____, “국립중앙도서관연보 2014”, 국립중앙도서관, 2015.

김경순 외 5인, “도서 저작권 수출 가이드북 — 기초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3.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0년도(19년 실적) 공공 도서관 통계 지표 및 주요 질의응답”, 문화체육관광부, 2020.

한국문화정보원, “공공저작물(어문저작물) 민간 출판 이슈 검토 회의자료”, 한국문화정보원, 2017.

〈인터넷 자료〉

Infoplease, “Publications Incorporating United States Government Works”, Infoplease, <<https://www.infoplease.com/business-finance/notice-copyright/publications-incorporating-united-states-government-works>>, 검색일: 2020. 6. 27.

Pollock, Rufus, “Building the (Open) data ecosystem”, Open Knowledge Foundation, <<https://blog.okfn.org/2011/03/31/building-the-open-data-ecosystem/>>, 검색일: 2020. 6. 29.

A Study on the Problem of Commercial Publication of Public Product and Improvement Plan

Kim, Kwangsik

Public product, which is created by public institutions with the purpose of the public interests or created with public funds, is a public asset and can be used for commercial utilization depending on the value of academic and industrial development. However, as a side effect, some publishers publish them as they are and sell them at high prices. In addition, compensation for specimen copy is paid in spite of identical publications and such publications derive benefits from public libraries. Furthermore, there are concerns about misconception on the publications, ease of commercial publication in e-book market, and possibility of compensation for Public lending right.

In the sense that public product creates new added values through secondary utilization in private sectors and has high marketability, commercial utilization needs to be guaranteed. Nevertheles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commercial publication without any improvement, meets these expectations.

Thus, this study looks into the problems that occur in the process of commercial publication of public product and other issues that need to be reviewed, proposing improvement plans including the revision of Publishing Industry Promotion Act, Copyright Act, Libraries Act, and National Assembly Library Act.

Keyword

Public product, Public works, Public data, Public library, Commercial publication, Legal deposit reimbursement, Public lending right